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향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15

발의연월일: 2024. 8. 12.

발 의 자:권향엽·민병덕·염태영

문진석 · 김남근 · 임미애

허성무ㆍ김 윤ㆍ이병진

박해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(LPG)의 충전을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LPG충전소에서만 충전을 허용하고 자가충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.

그런데, 2010년 이후 LPG차량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, 전기차·수소차로의 급속한 전환, 인건비 상승 등 LPG충전소의 경영환경 악화로 휴업·폐업하는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LPG자동차의 자가충전이나 LPG충전소의 전기·수소 등 친환경연료 충전소로의 전환이나 설비의 추가 설치 등이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LPG차량이 LPG충전소에서 자가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현행 LPG충전소가 미래 융·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 연료 충전소로의 전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쇠퇴하는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제1항 및 제46조의2 신 설).

법률 제 호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9조제1항 본문 중 "하며,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"를 "한다"로 한다.

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6조의2(친환경연료 충전설비 전환 등을 위한 지원)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 도지사는 제외한다)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전기·수소 등 친환경연료 충전사업소로 전환하거나 친환경연료 충전설비를 추가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73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9조(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 제29조(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 가스 충전행위의 제한) ① 액 가스 충전행위의 제한) ① ---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 를 충전 받아야 하며, 자기가 -----한다. -----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46조의2(친환경연료 충전설비 전환 등을 위한 지원) 산업통 상자원부장관, 시・도지사 및 시장・군수・구청장(특별자치 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 외한다)은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자가 전기 · 수소 등 친환 경연료 충전사업소로 전환하거 나 친환경연료 충전설비를 추 제73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5. (생략)
- 6.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직접 충전한 자
- 7. ~ 19. (생략)
- ④ ~ ⑥ (생 략)

가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73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3	 	 	

1. ~ 5. (현행과 같음) <<u>삭</u> 제>

7. ~ 19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